

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- 13호

「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7일

## 강 원 도 지 사

###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개정이유

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「소방기본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법령이 개정(시행 2020.4.1.)됨에 따라 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, 현장부족인력 확충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목적 추가(안 제1조)

나.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(안 제2조)

- 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,115명 → 6,436명(증 321명)  
\* (증원 321명) 소방직 321명
-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 : 2,250명 → 2,249명(감 1명)
- 소방본부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3,682명 → 4,003명(증 321명)
- 합의제행정기관 정원의 총수 : 44명 → 45명(증 1명)

다.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\*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('20 ~ '24년) : 129,223백만원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7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《의견제출 및 문의처》

- 주 소 : (우 24266)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
- 전 화 : 033-249-2265
- 팩 스 : 033-249-4013
- 이메일 : cjm2383@korea.kr

##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0조까지”를 “제30조까지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,115명”을 “6,43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,250명”을 “2,249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3,682명”을 “4,00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44명”을 “4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3]

**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	경제자유 구역 청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<b>총 계</b>	<b>6,436</b>	<b>1,683</b>	<b>92</b>	<b>4,038</b>	<b>102</b>	<b>59</b>	<b>417</b>	<b>45</b>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-						
도지사	1	1	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9</b>	-						
4급상당	1	1						
5급상당이하 소계	8	7	1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2,130</b>	-						
1급	1	1						
1 ~ 2급	1					1		
2 ~ 3급	2	1	1					
3급	14	10		1	1	2		
3 ~ 4급	2	1						1
4급	104	65	10	7	4	4	14	
5급이하 소계	1,992	1,239	79	130	97	52	356	39
전문경력관 소계	14	5	1	4			4	
<b>연구직 계</b>	<b>212</b>	-						
연구관	42			38			4	
연구사	170	4		131			35	
<b>지도직 계</b>	<b>29</b>	-						
지도관	8			8				
지도사	21			21				
<b>소방공무원 계</b>	<b>4,008</b>	-						
소방감								
소방정	25	7		18				
소방령이하 소계	3,983	341		3,633			4	5
<b>교육공무원 계</b>	<b>47</b>	-						
총장	1			1				
교수	32			32				
조교	14			14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및 제28조부터 <u>제30조까지</u>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0조까지</u>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--.</p>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,115명</u>으로 하고,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2,250명</u></p> <p>2. 소방본부 · 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3,682명</u></p> <p>3. · 4. (생략)</p> <p>5. 합의제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: <u>44명</u>(소방직 5명 포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6,436명</u>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2,249명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4,003명</u></p> 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 <u>45명</u>-----</p>